

현장 근로자 식당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서

2015.08.12.

□ 법률자문 요청 사유

- 현장 근로자식당에 대한 다음의 업무추진 시 관련법규 등에 저촉 여부 확인
 - 추진업무1 : “공정하게 선정되는 깨끗한 현장 식당 추진을 위한 검토”
 - 추진업무2 :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제공”
- 기존 식당운영 관례에 의해 건설시공사에 의해 운영중인 현장 근로자의 식당 선정 및 운영 관련기준을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시 SH공사에서 지정할 경우 법적 문제점 확인
- 상기 업무추진은 선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바, 법적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강구

□ 기존 현장 근로자 식당 운영현황

- 식당 선정 주최 : 공공사업을 수주한 수급업체
- 식당 선정 방법 : 시공사 본사 또는 현장소장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 공정하게 선정되는 깨끗한 현장 식당 추진을 위한 혁신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49호('14.12.10) 투자 · 출연기관 혁신방안
 - 사장 방침 제545호('15.07.04) SH공사 혁신 세부추진계획(안)
- 검토배경
 - 현장식당 선정 시 인맥에 의한 건설비리 관행을 차단하고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직간접적인 효과 유발
- 현장식당 관련현황

발주기관 (SH 및 내공사 등)	시공사	
	10위권 내 대형기업	대다수 업체
- 시공사에 일임 - 별도 관리기준 없음	- 본사 경쟁입찰	- 본사 또는 현장소장 수의계약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문 제 점

-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수수 관행화
- 건설현장 내 식당은 관리감독이 미 실시되고 양질의 식사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못함
 - ☞ 건설노동자의 식사 불만은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2011.3.24.(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공공사업 발주시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
- 착공신고 시 '건설현장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식당 설치현황 통보 의무화

- 혁신방안

- 발주 시 건설현장 식당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공정입찰 유도

구분	내 용
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서에 관련기준 마련 · 대상현장 : 시공사에서 현장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공사계약 건 · 운영업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한 일반음식점 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체급식이나 식당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선정 후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현장 주소지 내에서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운영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 ☞ 입찰과정 중 PQ평가 자료제출 시 현장식당 대상업체 Pool을 제출하여 대상업체에 한해서만 공개 평가 및 경쟁진행 ☞ SH공사가 선정한 전문가 집단 Pool에 의한 공개 평가 실시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량업체를 선정 및 운영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내부기준과 재량에 맡김 : 최소기준만을 제시함
시공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통보 · 업체선정 및 계약결과를 SH공사에 통보 : 이행여부 확인

- 시민고객의 평가를 통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
 - ☞ 값싸고 질 좋은 식사 제공으로 현장 근로자 권익 보고

- ☞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통한 근로자의 근로의식 고취를 통한 질 좋은 아파트 생산
- ☞ 추진방안

평가 시기	시민고객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 기준 : 반기별 1회 · 기타 : 현장근로자 민원발생 시	· 음식업 관련 대학교 교수 및 관련기관 전문가 : 5인 -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협회 한국외식산업연구소 등 ·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 1인	기준 점수 미달 시 SH공사 현장식당 입찰참가 제한

○ 식당 설치 후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로 불법 영업행위 방지

- 선정된 업체는 관할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식당 영업신고 통보
- 통보결과를 SH공사에 시공사를 통하여 제출
- ☞ 비자금, 탈세 방지 및 식품위생관리의 안정성 확보(현장 식당 영업의 투명화)

□ 관련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기타 상기 업무의 추진에 의해 관계될 수 있는 법규 : 법률자문 시 검토요망

□ 법률자문 요청사항

-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관련 법규에 의한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 여부
- 기존에 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현장식당의 운영에 SH공사의 입찰공고 시 개선기준 공지 후 관련 기준 이행시의 법적 문제점 발생 여부
-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제공 시의 법적 문제점 발생 여부
- 상기 업무추진은 선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바, 법적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 기타사항

- 관련업무 추진시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법률자문사 자문 요망.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문('11.03.21.) 1부.

2.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서울시 도시활성화과, '15.7.13) 1부. 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25 호

의 안 명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 제도개선」

관 련 기 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의결연월일 2011. 3. 21.

주 문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3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별지]

공공 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 제도개선

2011. 3.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및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분석	4
①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의 구조적 부패 ...	4
② 건설현장식당을 탈세창구로 악용	6
③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근로자 권익복지 침해 ...	8
IV. 개선방안	9
① 건설현장식당의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9
② 대형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간 협조 강화 ..	12
V. 조치사항	14

붙임 : 참고자료 1 부/15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최근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집) 브로커 유○○씨(65·구속기소)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사건 확대 수사 중
 - 전직 차관, 경찰청장, 청와대 감찰팀장, ▲▲건설, □□기업 임원 등 수사
 - ※ 뇌물수수 사건은 수천에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 이와 같이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등이 관행화
 - 정·관계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건설업체의 비자금,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
 - 식품위생 사각지대로 인한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침해
 - ※ 공공주택(1,000세대 기준) 사업장당 2~3억원 정도 리베이트 추정
- 부패예방 차원에서 공공 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선정 절차 투명성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건설현장식당 운영 관련 기초자료 수집(1월)
- 실태조사(1월)
- 개선방안 마련(2월초)
- 관계부처 1차 의견조회(2.1~2.11)
-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2.28)
 -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및 법조계, 학계 20명참석
- 관계부처 2차 의견조회(3.2~3.4)
- 위원회 안건 상정(3월중)

II

제도 및 일반현황

□ 관련 법령

- 건설현장 지도·감독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전기·소방공사 등 개별 공사업법」, 「책임감리자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 등
- 건설현장식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 「건축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현장식당 위생 등 관리 감독 법령
 -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등

□ 건설현장식당(함바)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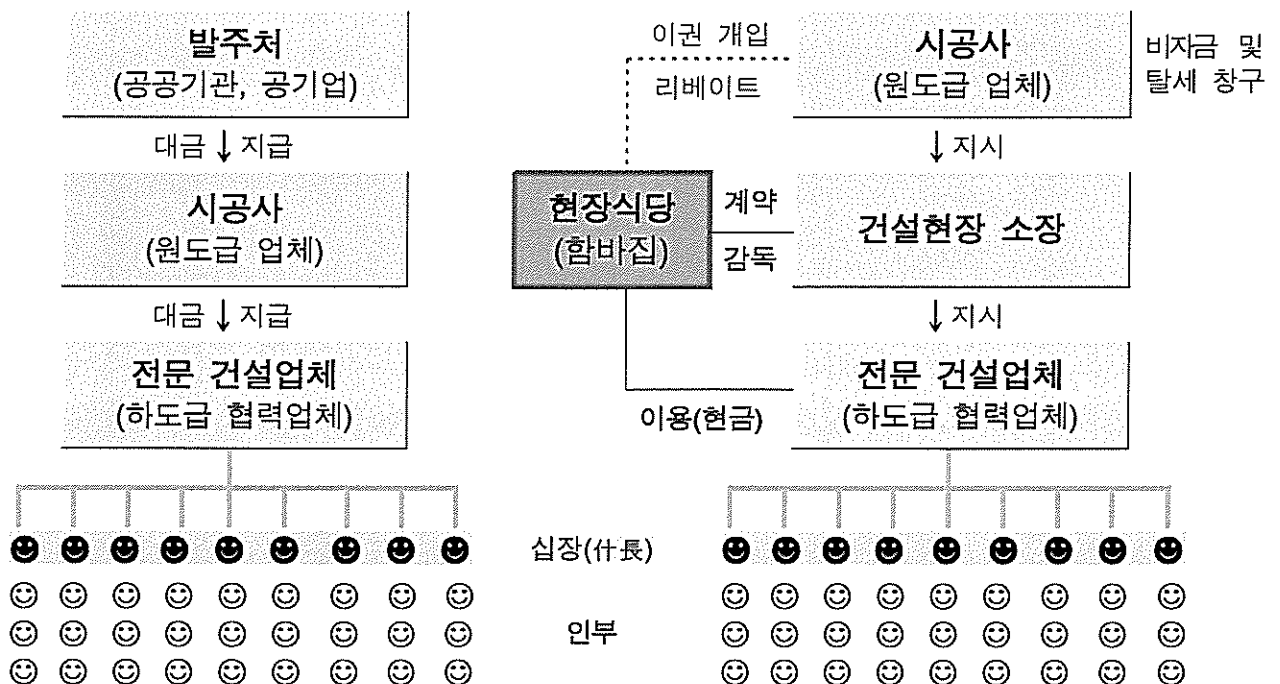
- 함바집은 '노무자들의 합숙소'라는 의미이다. 일본어(はん-ば[飯場])에서 유래. '건설현장의 식당'을 의미 → '건설현장식당'으로 용어 통일
 - 현장식당 설치목적은 근로자 후생복지 및 생산성 제고(작업시간 준수 및 음주행위 근절 등)

➡ 본 제도개선안은 공공 사업장에 설치된 건설현장식당(함바)을 적용대상으로 함

□ 공공사업 수주 및 건설현장식당 선정 구조

【사업 수주 및 참여 구조】

【건설현장식당 선정 구조】



○ **건설현장식당 운영 업체수 : 2,400여개 이상 업체(민간부문 포함)**

- 현재 10위권내 대형 건설업체 기준시 700여개
- 중소형 건설업체를 포함하면 1,700여개 정도(영세업체 포함)

※ 공사기간이 2~3년 이상 되는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현장식당 업체는 1년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음
 → 증장비를 이용하는 토목공사보다는 인부가 많이 투입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 사업장에 많음

○ **건설현장식당 선정·운영 관리 현황**

- 선정 주최 : 공공사업을 수주한 수급업체(시공사 또는 협력업체)
 - 공공사업 발주처는 현장근무자가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소속임을 이유로 식당선정 및 운영에 형식적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회피
- 선정 방법 : 시공사 본사(협력업체 포함) 또는 현장소장이 수의 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현장식당을 선정(식사 1식 단가계약)
 -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현장소장에게 권한을 형식적 위임

※ 지방의 현장식당업체는 시공사 본사에 청탁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을 브로커를 고용하여 리베이트 제공(일부 시공사는 퇴직자 또는 노조 모임 등에서 자체 운영)

【주요 건설사 건설현장식당 선정방식1)】

업체명	개수	선정 및 관리방식	비고
삼성물산	200	현장소장이 개별적으로 지정	
현대건설	150	우수협력업체 중 본사 심사 후 선정	
대우건설	130	토목은 현장별 선정, 주택은 본사 직접 선정	
GS건설	100	퇴직임원 모임 설립사(상락푸드)가 운영	
동부건설	100	공개입찰, 일부는 현장소장 지정	
SK건설	42	시공사 본사에서 선정 및 관리	
금호건설	40	시공사 본사가 가격 등 심사해 입찰로 선정	
대림산업	13	시공사 본사가 직접 선정 운영 관리	
롯데건설	10	현장별로 직접 선정 운영	
현대산업관리	10	협력업체 등록 후 운영	
포스코 건설	10	입찰방식	PT심사 평가
LIG건설	2	노조운영, 경쟁입찰	
신동아건설	1	시행사 또는 조합에서 관리	
한화건설	-	자료 미공개	
삼환기업	-	자료 미공개	

※ 중소형 건설사 합바집 운영 : 본사 또는 현장소장 지정 관리(1,500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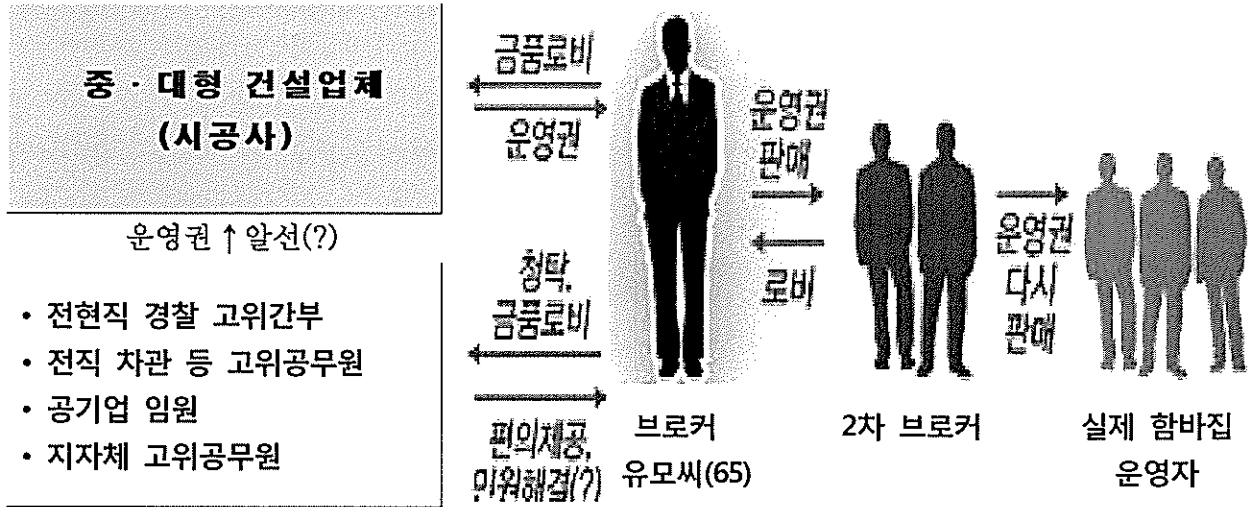
1) 자료출처 : 서울경제신문(2011.1.11) 기사내용

III

문제점 분석

1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의 구조적 부패

【건설현장식당 유○○씨 게이트 사건 개요】



※ 전직 경찰청장, 경찰간부 등 10여명 이상 연루됨

- ▶ 하도급(지역 협력업체)과 지역 함바들은 원청업체(시공사)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
 - 시공사 본사(중대형 업체)가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여하면서, 지역 함바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운영권을 따냄(브로커에게 커미션 지급 관행 상존)
 - 지역 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 40% 이상에 따라 함바집도 지역소재 업체가 참여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자체조례
 - ※ 권익위 실태조사(201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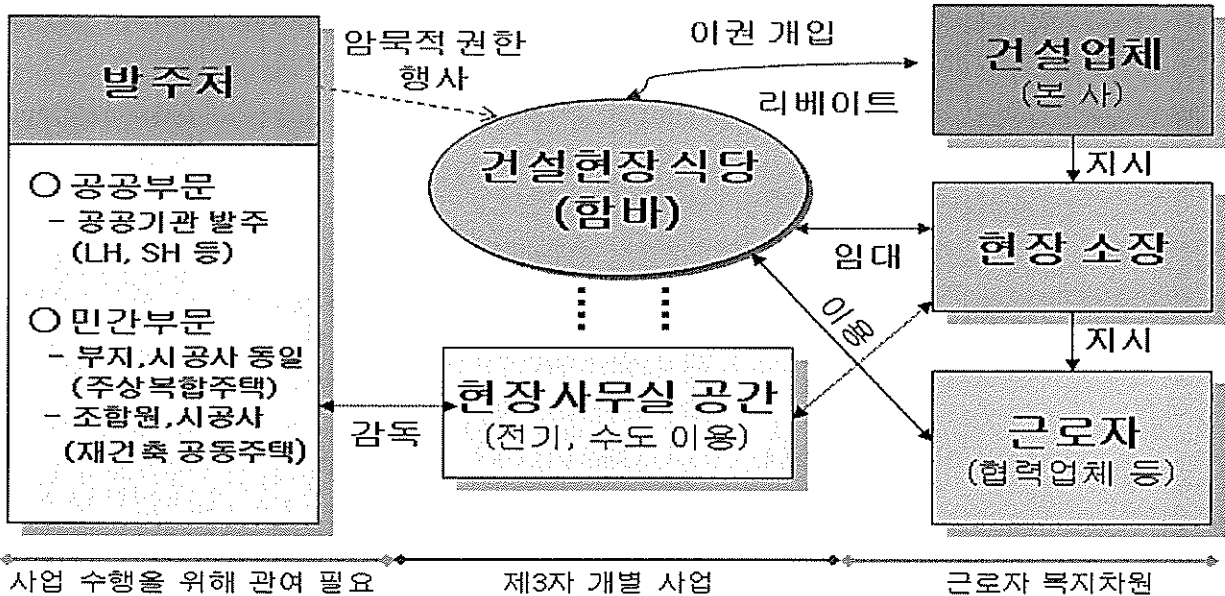
□ 시공사 본사의 개입으로 선정과정의 비자금 창구화

○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

- 현장식당 공사 사업장 부지에 임시식당을 설치하여 근로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공사 본사에서 식당업자를 임의적으로 결정
- 대부분 높은 단가로 구두 또는 수의계약 체결 등 시공사 본사 독단적으로 결정

※ 발주처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 관행 존속

【현행 건설현장식당 부패 구조】



○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 관행화

-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금품살포는 물론 각종 인맥을 동원한 총체적 로비 치열
- 건설현장식당은 현장인부를 상대로 독점적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권만 획득하면 현장 인부 수에 따라 확실한 수익 보장
- 독점적 이익 및 운영편의 보장 등으로 인해 초과이윤이 발생 가능하며 초과이윤은 리베이트 비용으로 활용

※ 건설현장식당 건물임차료나 수도 및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이 관행화 되어 있음

- 함바집의 한끼당 식대는 통상 4,000원 안팎이며, 하루 3끼 식사와 오전, 오후 새참까지 합치면 인부 한 명당 최소 하루 2,3끼의 식사를 하게 됨
 - 통상 인부가 500명 정도인 1,000가구의 대형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의 함바집 순수익은 연 3억~4억원으로 추산되며, 공사기간이 2~3년이 경우에는 10억원 안팎의 이익이 보장됨
 - 함바집은 인부 식사비용은 물론 관례적인 로비 웃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각종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온상
 - 퇴직임원 참여하는 함바집의 경우,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집행됨
-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대형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소방 등 개별 공사업법(국토해양부)에 의거 시공 및 감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 현장식당은 위 대상에 미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시행 →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은 현장식당에 관한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1억원 이상)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건설현장식당을 탈세 창구로 악용

□ 건설현장식당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탈세

- “직영” 음식점이 아닌 “위탁” 음식점으로 불법영업 성행

- 건설현장식당은 시공사의 직영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나, 대부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 직영음식점 운영의 경우 관계기관에 영업신고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편의가 있음에도 위탁하여 비자금 마련 창구로 활용

- 무허가 영업행위의 묵인 및 편의 제공을 통한 불법행위 유도

- 건설현장식당은 사업착공 후 일정기간 후에 가능하기에 그 이전에는 사업장 지하층 또는 1층에서 무허가로 영업

※ 가설 건축물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준공전 지하층, 1층 등에 함바식당 운영은 불법임(안전사고 위험)

○ **중소형 건설사업장 현장식당의 경우, 대다수 미신고 영업행위로 탈세**

- 건설 사업장을 1년에 3, 4번 옮겨 가야하는 특성상 대부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장 현장식당의 경우 연간 4천~5천만원 세금 부과 가능

- 건설현장식당은 사업 착공 후 1년 후에 개시하는 관계로 건설 공사 시작후 일정기간 동안 영업자의 자진신고 없이는 사업시행 여부 파악 곤란

※ 영업신고를 기피함으로써 위생신고 회피 및 관련 세금 탈세행위 만연

□ **부서관 협조미흡으로 불법영업행위 적발 곤란**

- 주택, 건설 관련 사업 인허가 부서는 환경평가, 개발 타당성 평가만을 실시할 뿐 위생시설 및 근로 조건 등은 소관업무로 인식하지 않음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사업 시행 인가)

- 건설현장식당(합바)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지만, 정보 공유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관리 소홀

※ 건설현장 식당(합바)는 가건축물 승인을 받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음식점 사업자 등록 필요

→ 사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인해 공사장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부산시 건설현장식당 위생지도 단속 실적】

(2011년도 기준, 단위 : 개소)

사업장수	영업신고 현장식당	무신고 현장식당	행정제재
27	19	8	고발(사법조치)

· 부산시 조사결과 부산지역 건설현장식당은 모두 27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영업신고 현장식당은 19개소로 나타났고, 나머지 8개 무신고 영업장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치함
 ※ 권익위 실태조사(2011.1월)

- 공동주택 500호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장은 함바집 큰 이익이 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나, 500호 미만의 사업장 함바집은 대부분 수익계약으로 인맥을 활용하여 영업하고 있음
- 500호 이상 규모 사업장은 중·대형 현장식당 업체 참여
- 500호 미만 및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업체 참여로 불법 영업 가능
-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3 식품위생 안전 사각지대로 근로자 권익복지 침해

○ 중소형 사업장의 건설현장식당에 대해 식품위생관리 취약

- 음식물(김치, 고기 등)의 원산지 표기 미이행, 주방 등 위생관리 미흡
- 관련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구분되는 현장식당도 영업신고 후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현장식당의 영업행위 미인지로 인해 점검 미 실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표시) 영업신고 후 1개월 이내 위생점검 실시

- 식당내 환풍기 미설치로 먼지, 곰팡이, 음식물 폐기물 관리 미흡

○ 현장 작업기간의 잦은 변동으로 근로자 권리주장 미흡

- 현장 근로자들은 일반식당보다 값이 싸서 이용하고, 대금은 건설사(협력업체)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 실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나 참여 권한은 없음(음식질이 낮아도 할 수 없이 먹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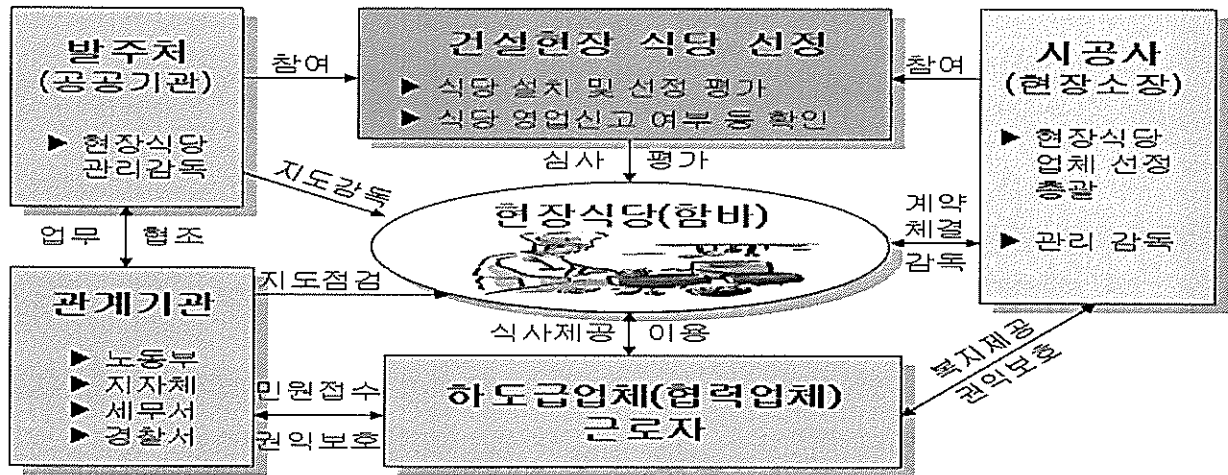
IV

제도개선 방안

1 건설현장식당의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 발주처의 건설현장식당 관리·감독 강화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선정 개선방향】



현행 건설현장식당 관리체계

- 공공사업 '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공개경쟁 및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 종합건설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사업 등)
- 공공사업 '시공·감리 행정지도·감독 권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개별 공사업법에 따름
- ➔ 공공사업 발주시 건설현장사무소 설치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현장식당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은 없음(현장식당 선정 및 불법영업 방지장치 마련 필요)

○ 발주사업 '시방서2)'에 건설현장식당 내용 포함 시행

-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처(지방공기업 포함)는 "시방서"에 건설현장식당 내용을 포함
- 발주처에 지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포함

➔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된 「주택, 토목건설 전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공
 ※ 「LH 2010년 주택건설 전문시방서」를 참조하여 표준안 시행

2) 설계제도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 ▶ 「LH 2010년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P. 36 가설건물에 포함되어 있음
- 가설식당이 공사 사업부지내에 설치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규 등에 적법하되 다음의 가설식당 설치조건을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LH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발주처에서 건설현장 식당이 필요한 경우 직영 또는 분리 발주 추진
 - LH 2010년도 직할시범지구 사업(보급자리 주택임대사업 등)내 현장식당 설치

○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 “건설현장식당 선정 계획서” 제출 의무화

- 공공사업 수급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의한 영업신고 사항이 포함된 선정계획서 제출 의무화

※ 착공계 제출서류(주택사업, 도시사업개발 관련 지침, 건축법 범위에서는 1년 이내 제출)
 → ①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사용인감계,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공사도급계약서, ⑦ 설계 및 도급계약서, ⑧ 현장 대리인계, ⑨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⑩ 기사수첩 사항 ⑪ 착공계 서류도장, ⑫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이를 통해 현장식당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발주처에 책임부여

➡ 건설현장식당 선정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개정(국토해양부)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①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용 도로 2. 가설 사무실,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프랜트 및 크랫사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p>② 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설 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 시설물이 공사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 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 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시설물의 이용 및 프랜트시설의 가동등으로 인해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p>제17조(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① ~ ②은 현행과 같음</p> <p>③ 감리원은 “주택, 토목 건설 표준 시방서”에 따라 건설현장식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착공시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p>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선정 사례】

1군 업체 P건설 사례

- ▶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경쟁입찰과정을 거쳤으나, 장·단점이 발견되어, 현재는 일정자격기준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PT)로 업체 선정
 - 현장식당 설치기준 : 1일 평균 출력인원 500명 이상
 - 식당 운영기간 평균인원 삽입(공사기간이 3년이면 2년 정도로 추산)
 - 평가위원 구성·운영 : 본사 차원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참여 업체수 : 6개 이상 업체를 대상 심사 평가
 - 평가항목 : 사업계획, 메뉴, 인력투입, 실적, 손익분석, 직영·위탁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 ☞ 분기 또는 반기별 인원을 추산함(업체별로 다름)
-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2군업체 N 건설 사례

- ▶ 본사 차원에서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현장식당 선정·관리
 - 1차 일정자격 기준 이상을 심사하고, 6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 ○○공사장 현장식당은 S급식업체로서 1끼 가격이 3,500원정도이며, 식단은 된장국, 밥, 4개 반찬으로 구성되어 양호한 편임
 - 6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경쟁방식이나 담합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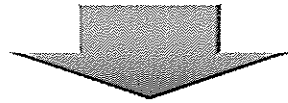
【건설현장식당 운영의 장·단점 분석】

선정방법	장 점	단 점	비 고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에 협조적인 업체 선정 ▶ 적기 적소 식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과정의 불투명 (브로커 등 개입) ▶ 특정업체 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기금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
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선정의 투명화 ▶ 가격단가 하락(1식 3,500원) ▶ 근로자 임금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질이 떨어짐 ▶ 단일 메뉴 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 집합지역 음식점과 같이 음식질이 떨어짐
제한경쟁 (심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가격과 건실한 업체 선정 가능(1식 4,000원) ▶ 근로자대표(노조원)평가 위원으로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선정과정 불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복지차원이므로 음식질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영세업체들이 음식질이 좋음 (전통음식과 손맛 등) ※ 설령탕 전문집 같은 전통맛

2 대형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현행 업무처리 체계

- 주택건설 관련 대형 사업 승인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환경평가, 사업 타당성만 심의하여 결정함
 - 부대시설인 건설현장식당 설치에는 업무 외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음
 - ➔ 대형 건설 사업장 현장식당은 지자체 식품위생과 및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나 영업신고를 기피하여 미 실시 (불법영업 및 탈세 창구화)



□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의무화

- 영업신고 없이도 사전에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영업사실을 인지토록 시스템화

-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지침(가칭)」의 제정을 통해 관련기관에 통지 의무 부과

➔ 주택, 토목건설 관련 대형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 통보 안내지침 제정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통보)

※ 훈령, 고시, 지침 예시

- 관계기관 : 사업 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식품위생 등
- 사업규모 :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예) 공공기관 발주 공동주택 500호, 다수인원이 투입되는 건설 공사장
(1일 출력인원 평균 500명 이상 사업장)

- 통보기한 : 주택, 건설 관련 인·허가 후 3개월 이내

예)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지침 제정(안)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 지침 제정(안)’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 인가)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시 다음 각호의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노동, 식품위생 전기, 수도, 가스 관계 기관

※ 주택법 및 도정법 사업승인 규모

- ▶ 100,000㎡ 이상(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 ▶ 100,000㎡ 미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대형 사업장 행정지도 · 관리감독 강화

○ 건설현장식당 업체 납세의무 안내 철저

-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

○ 건설현장식당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등 지도 · 점검 철저

- 주관기관 : 사업 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식품위생 등
- 정부업무평가 지도 · 점검항목에 건설현장식당 포함

○ 시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 안내 철저

- 국토해양부(지자체 포함) 주택 건설사업 승인시부터 건설현장식당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안내

· 대형 공사장이 주택지 및 상가 등과 접한 지역은 주변 식당이용이 가능

➔ 기 시행중인 지자체 우수사례를 전 공공기관으로 전파 확대(기관 자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당 이용 권고 (시공사에 대한 교육홍보)

※ 서울시 강남구청, 부산시 수영구청, 전라남도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건설현장 식당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안내(본 제도개선안을 참고하여 활용)

【 기대효과 】

① 공공사업 발주처에서 건설현장식당 선정·관리로 투명성 제고

②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식당 영업신고 의무화 등 심사평가 실시로 시공사와 식당업체간 불법 관행 차단

③ 건설현장식당 설치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로 불법 영업행위 방지

- 비자금, 탈세 방지 및 식품위생관리 안전성 확보(현장식당 영업 투명화)

④ 값싸고 질 좋은 식사제공으로 현장 근로자 권익 보호

⑤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운영 제도개선안 민간사업장으로 전파

V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건설현장식당 운영 관리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의 건설현장식당 관리·감독 강화 - '시방서'에 현장식당 내용 포함 -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 건설현장식당 선정 계획서 제출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훈령, 고시 자체 업무지침	국토해양부	2011.9월
2. 대형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간 협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식당 설치예상 사업장을 관계 기관 통보 의무화 - 관계기관 : 관할세무서, 경찰서 등 - 사업규모 :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통보기한 : 3개월 이내 - 훈령·고시(지침) 수준형태로 시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식당 업체 납세의무 안내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 	식품의약품 안전청, 국세청 등	식품의약품 안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식당 식품위생 등 지도·점검 철저 - 주관기관 : 사업장 관할기관 - 지도단속실적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훈령, 고시 자체업무지침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 안내 - 사업승인시부터 건설현장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안내 - 건설, 주택관련 협회에서 자체 제도 설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 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건설현장식당(함배) 영업 신고

신고대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처리기간	즉 시 (3시간 이내)	수수료 (수입증지)	28,000원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제 ■■■➡신고증 교부 ※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 시설조사		
민원인 준비사항 (구비서류)	○ 영업신고신청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필증(LPG 사용업소에 한함)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층66㎡, 2층이상100㎡이상에 한함) 1부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1부 ○ 건강진단결과서(영업자 및 종업원 해당) 1부		
민원인 검토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공무원 공부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02-2023-7785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0.11.26]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11.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02) 2023 - 7785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12.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02-2023-7785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개정 2010.6.30>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 (2)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을 하려는 경우
-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

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 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번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 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 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 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 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 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 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 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 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사)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

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영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제5호·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신고증

「주택법」

[시행 2011. 1.28] [법률 제9982호, 2010. 1.27, 타법개정]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9982호, 2010. 1.27> (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12.27, 타법개정]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②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⑤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⑥ 삭제 <2009.2.6>

⑦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2.6>

부칙 <제10416호, 2010.12.27> (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기술공사의 기술 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9999호, 2010. 2. 4, 타법개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부칙 <제9999호, 2010. 2.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생략

제9조 생략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10.7.12>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 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기 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책임질 사유로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하자 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 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 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2.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책임질 사유로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하자 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 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 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제79조제2 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제외한다.	법 제82조제1 항제2호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4.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 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 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때	법 제82조제1 항제2호의2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 술자보유현황 등을 거 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 항제2호의3	4개월		4개월		4개월	
6. 법 제29조제5항에 따	법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큰 통보를 허위로 한 때	제82조제1항제3호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4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8.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9.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나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라목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라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3.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마목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호	5개월	1억원	5개월	1억원	5개월	1억원
		3개월	8000만원	3개월	8000만원	3개월	8000만원
		2개월	6000만원	2개월	6000만원	2개월	6000만원
1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1년	5억원	1년	5억원
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17.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18.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19.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 천 만 원 까 지	1 억 원	5 억 원	30 억 원 이 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2	6월	24	18	12	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3호	2월	8	6	4	2
7. 삭제 <2005.6.30>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월	24	18	12	6

비 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83조제2호	6월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6월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1년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6월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 제83조제12호	8월 6월 4월 2월

비 고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

1. 도시활성화과-7427호(2015.7.10.)와 관련입니다.
2.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4구역)과 관련하여 용산사고('09.1.20) 합의내용 중 미이행사항인 현장내 임시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붙임 회의결과에 따라 협조 요청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15.7.20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의결과 보고서 1부. 끝.

104411439345119

서울특별시



주무관	김지호	도시활성화정책팀 장	이순하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07/13
-----	-----	---------------	-----	---------	-----	-------

합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506 (2015.07.13.) 접수 견적발주팀-4132 (2015.07.27.)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도시활성화과(신 / karch@seoul.go.kr
 우 100-744 청사 11층)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karch@seoul.go.kr / 비공개(5)(5)

본 문서는 SH공사의 문서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고-1427
발급일자	2015.7.10.
공개여부	비공개
문서번호	

	시 인	
주요연	도시활성화정책추진팀	도시활성화과장

용산4구역 세입자 협의사항 이행 관련 대책 회의 결과 보고

☑ 용산4구역 협의사항 이행 관련 대책회의 결과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5. 7. 9(목), 10:30~11:00
- 장 소 : 도시활성화과 회의실(시청본관 11층)
- 참석자 : 총4명

- 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담당
- SH공사 건설사업처장(김영수)

○ 회의내용 : 용산4구역 합의사항 이행 관련 공사 현장내 임시착당 지원 방안 논의

<원정 임시착당 제공 이행 확인서> _'09.12.29
 진철현 세입자(23명)에게 임시착당 문영권(구역내1개소, 지벌소제1개소)를 시공사와 협의하여 제공하되 운영권 중 구역 내1개소는 확공시에 제공하고, 지벌소제1개소 제공시기는 시공사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약속(서울시, 용산구)
 ※ 용산4구역내 제공되는 현장 임시착당 운영권은 제3자에게 위탁

■ 회의결과

- SH공사 발주예정인 공사장내 현장 식당 지원
 - 유가족(세입자)측에서는 용산4구역 사업규모와 비슷한 1,800세대 규모 정도의 현장을 요구하고 있음
- SH공사에서 발주예정인 공사현장 중 해당규모에 적합한 현장 추천 요청 (공문시행)
- SH공사에서는 해당 현장 및 세부계획, 추진일정 등을 우리사에 제출

104411439345145

용산4구역 관련 회의결과 보고

2015. 7

도시활성화과

이동구 / 건적발주팀 / 2015-08-12 11:05:35

본 문서는 SH공사 의 문서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 원장식당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

- 원장식당 지원 대상지 등이 확정되면 SH공사에 협조 요청(공문서 형)

- 원장식당 지원 세부사항은 SH공사와 세입자 대표간 협의하여 진행하되, 추후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시공사와 협의

○ 협의사항 이행 담보에 관한 사항

- 원장식당 운영 지원 확정시 사용자-유가족(세입자)간 "협의사항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행 담보

104411430345145

2015. 8. 24.

수 신 SH공사 (자문의뢰번호 2015-95)
참 조 법무팀(김은주 주임님), 건축공사1팀(전재만 차장님)
발 신 법무법인(유) 원
제 목 현장 근로자 식당 관련 법률질의

귀 공사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보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가. 건설현장식당의 문제점

기존 건설현장식당은 식당을 선정하는 주체가 공공사업을 수주한 수급업체였고, 수급업체의 본사 또는 현장소장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식당운영업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둘러싼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관행화되었음. 또한 건설현장식당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양질의 식사가 건설현장근로자에게 제공되지 못하였음. 건설현장근로자의 식사에 대한 불만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3. 24.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공공사업 발주시 지방서에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 착공신고시 ‘건설현장식당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관할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식당 설치 현황 통보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나. 귀 공사가 마련한 혁신안

(1) 발주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공정입찰 유도

구분	내 용
발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서에 관련기준 마련 · 대상현장 : 시공사에서 현장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공사계약 건 · 운영업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 24 조에 의한 일반음식점 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체급식이나 식당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선정 후 식품위생법 제 22 조에 따라 현장 주소지 내에서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운영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 ☞ 입찰과정 중 PQ 평가 자료제출 시 현장식당 대상업체 Pool 을 제출하여 대상업체에 한해서만 공개 평가 및 경쟁진행 ☞ SH 공사가 선정한 전문가 집단 Pool 에 의한 공개 평가 실시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량업체를 선정 및 운영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내부기준과 재량에 맡김 : 최소기준만을 제시함
시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통보 · 업체선정 및 계약결과를 SH 공사에 통보 : 이행여부 확인

(2) 시민고객의 평가

평가 시기	시민고객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기준:반기별 1 회 ·기타:현장근로자 민원발생 시	·음식업관련대학교교수및관련기관 전문가 : 5 인 -한국의식업중앙회및협회, 한국의식산업연구 소 등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 1 인	기준 점수 미달 시 SH 공사 현장식당 입찰참가 제한

(3) 식당 설치 후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로 불법 영업행위 방지

건설현장식당으로 선정된 업체는 관할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식당 영업신고 통보하고 통보결과를 SH 공사에 시공사를 통해 제출.

이상의 사실관계 하에서 귀 공사는 저희 법인에게

- (1)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식당 혁신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의 법적인 문제점 발생 여부
- (2)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 여부
- (3) 상기 업무 추진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질의사항 (1)에 대한 답변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 3 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 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 2 조(定義)제 7 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 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 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 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제 5 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3 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6 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① 법 제 3 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 ② 법 제 3 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③ 법 제 3 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④ 법 제 3 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⑤ 법 제 3 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52 호)

IV.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 3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 5 조제 3 항 제 4 호)

-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4)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5)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6)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2) 검토 의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되는바, 본건의 경우 귀 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에 의하더라도 귀 공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귀 공사의 시장점유율 수치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 단계(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으로는)에서 귀 공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 공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귀 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식당 혁신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5개 유형은 모두 ‘부당하게’라는 부당성 요건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축진’이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라는 입법 목적에 맞춰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귀 공사의 건설현장식당 혁신안은 2011. 3. 2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합바) 운영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강구된 방안인 점, 건설현장식당은 공공사업장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사업(아파트 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건설현장식당 혁신안은 발주처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해 마련된 본건 귀 공사의 건설현장식당 혁신안이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귀 공사의 건설현장식당 혁신안(및 혁신안에 따른 시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귀 공사의 건설현장식당 혁신안(및 혁신안에 따른 시행)이 시공사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에 따라 무효로 볼 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 혁신안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공기업법(제3조 등) 위반의 문제 등 기타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사항 (2)에 대한 답변

살피건대, 귀 공사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용산4구역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귀 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사와의 협의하에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을 한시적으로[귀 공사가 제공한 2015. 7. 용산4구역 관련 회의결과 보고서에는 2회(용산4구역 내 1개소, 지방소재 1개소)로 기재되어 있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법령 위반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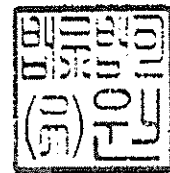
다만, 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식당의 혁신안은 시공사로 하여금 건설

현장식당의 선정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 회사가 위와 같이 용산4구역 세입자에 대하여 시공사와의 협의하에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제공하는 것은 위 혁신안과는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산4구역 세입자에 대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제공은 귀 회사가 위 혁신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의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이상호, 박준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24.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박준우



본 의견서는 귀사에서 제공한 자료 등에 나타나 있는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의견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귀사의 절의내용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추후 위 사안이 법원의 재판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는 위와 다른 용도로 또는 의뢰인 이외의 분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 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이상호	Tel.	02-3019-2152	Fax	02-3019-2198	E-Mail	shlcc@onclawpartners.com
담당변호사	박준우	Tel	02-3019-2165	Fax	02-3019-2198	E-Mail	jwpark@onclawpartners.com
담당비서	백지원	Tel	02-3019-2152	Fax	02-3019-2198	E-Mail	jwback@onclawpartners.com



법무법인(유)에이펙스

135-93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17-18층(리셉션17층)
Tel.(02)2018 0800 Fax.(02)2018 0850 apex@apexlaw.co.kr

2015. 8. 21.

수 신: 에스에이치공사
참 조: 김 은 주 주임님
제 목: 현장 근로자 식당 관련 검토
(Our Ref. No.:SH29A15.020CP)

귀사의 2015. 8. 18. 자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변호사 박 기 용



변호사 최 효 식



변호사 윤 준 필



본 의견서는 의뢰인께서 제공하신 계약서, 공문, 증거, 유선상 협의 기타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안과 쟁점에 한
정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상의 의견은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견서를 의뢰하
신 용도와 다른 목적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없고,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본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귀사는 귀사 발주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식당(함바식당)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선정되는 깨끗한 현장 식당”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 방안은 귀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서에서 식당 운영업체 요건 등 기준을 지정하고, 시공사의 식당 운영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서울특별시방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귀사는 귀사 발주예정 건설현장 중 일부에 대해서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식당의 운영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 방안이 추진된 배경은 서울특별시가 용산4구역 철거현장 세입자 유가족들과 어떠한 내용으로 보상 관련 합의를 하였고, 서울특별시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귀사에게 위와 같은 방안을 권고하여 귀사가 이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는 위 추진방안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가. 공정하게 선정되는 깨끗한 현장 식당 방안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

공정거래법 중에서 위반 여지가 있는 내용들로는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구속조건부거래 또는 거래상지위의 남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3조의2)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귀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수요시장’으로 확정할 수 있는데, 귀사는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기타 위 시장에서 거래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물론 이 부분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방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는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귀사의 위 방안과 관련 있는 부분은 ① 거래상 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 ③ 구속조건부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귀사는 발주자의 지위에서 식당 운영업체 선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시공자로 하여금 식당 운영계약의 내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일견 위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따라, 건설비리 관행을 차단하고 건설 근로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사가 식당 운영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공자의 계약상 자유의 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방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규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도가 될 인데, 위와 같이 시공자로 하여금 식당운영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찰조건을 붙이는 것이 위법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 10. 4. 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조에서 ‘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제3항), 재정경제부령인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 6. 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제2조 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추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사의 방안과 같이 건설현장 식당 선정기준 제시 정도로는 입찰 또는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방안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나.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귀사가 발주 예정인 공사장 내 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제공하는 방안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

위 방안은 시공사로 하여금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업체를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귀사가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귀사가 발주 시 건설현장 식당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보다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더 큰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위 방안은 용산4구역 세입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 이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경쟁제한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방안은 공사현장에서의 비리 차단이나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도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경영간섭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¹

물론 귀사가 입찰공고시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공사장 내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과 식당운영계약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공자와의 거래관계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불공정 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공자가 규모가 큰 건설업자라면 반드시 귀사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는 귀사가 시공자의 협조를 얻어 직접 세입자들과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경영간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관련하여서는, 설령 발주자인 귀사가 식당운영자를 직접 지정하는 식으로 시공사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므로, 위 계약사무규칙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

¹ 한편 대법원 2000. 10. 06. 선고 99다30817 판결은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진출입 제한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유류라는 거래 상품 및 그 관련 시장의 상황과 특성, 고속도로상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각 개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사안은 고속도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본건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법무공단

우 137-88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4 서초한샘빌딩
전화(02)2182-0000, 팩스(02)2182-0007, <http://www.kgls.or.kr>

작성일자 2015. 8. 27.

문서번호 2015 - 1928

수 신 에스에이치공사

참 조 법무팀 김은주

제 목 현장근로자 식당 관련 법률자문

귀 공사에서 보내신 표제의 자문에 대하여 관련 자료, 문헌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설현장식당(이른바 ‘합바집’)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또는 현장소장 등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건설현장식당을 선정해왔는데, 그 선정 과정이 불투명함에 따라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둘러싸고 관련자들 간에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건설현장식당 선정 관련 비리가 발생하였고, 건설현장식당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3. 24. 국토교통부(舊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에 ‘공공 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운영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였는바, 이와 관련해서 귀 공사는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 등에 아래와 같이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 관련 기준 등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구분	내 용
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서에 관련 기준 마련 · 대상현장 : 시공사에서 건설현장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공사계약 건 · 운영업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한 일반음식점 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체급식이나 식당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선정 후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현장 주소지 내에서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운영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 ☞ 입찰과정 중 PQ평가 자료제출 시 현장식당 대상업체 Pool을 제출하여 대상업체에 한해서만 공개 평가 및 경쟁진행 ☞ SH공사가 선정한 전문가 집단 Pool에 의한 공개 평가 실시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량업체를 선정 및 운영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내부기준과 재량에 맡김 : 최소기준만을 제시함
시공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통보 · 업체선정 및 계약결과를 SH공사에 통보 : 이행여부 확인

평가 시기	시민고객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반기별 1회 · 기타 : 현장근로자 민원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업 관련 대학교 교수 및 관련기관 전문가 : 5인 <li style="padding-left: 20px;">- 한국의식업증양회 및 협회, 한국의식산업연구소 등 ·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점수 미달 시 SH공사 현장식당 입찰참가 제한

2. 질의사항1)

1) 귀 공사가 추진하는 이러한 업무가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1) 귀 공사의 질의 취지에 맞춰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2) 귀 공사가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계약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지?

3) 귀 공사가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

3.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가. 질의사항 1), 2)에 대한 검토 의견²⁾

1) 귀 공사가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 내용으로서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해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발주처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 등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공사 측에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귀 공사가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해 기준 등을 공사 계약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관계 법령에 직접적으로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3조의2³⁾

2) 질의사항 1), 2)는 쟁점이 연결되어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3)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귀 공사를 건설공사 분야에 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계약 내용으로 정하려는 것이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귀 공사가 추진하려는 위 업무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등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4)은 건설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귀 공사가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해 제시하는 기준 등은 공사계약 금액 또는 공사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아파트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시공사 측에 과도한 부담이나 책임이 가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 관련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귀 공사가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해 제시하는 기준 등이 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그 외에, 귀 공사의 설명 및 송부자료에 의할 때,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해 귀 공사가 제시하는 기준 등 자체는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 공사로서는 시공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사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사항 3)에 대한 검토 의견

건설공사의 도급과 관련해서 발주처가 해당 공사 건설현장식당의 선정 및

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운영에 관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귀 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시공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이상의 검토 의견은 귀 공사에서 제공한 제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의견을 업무에 참조하시고, 다시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견서는 귀 공사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귀 기관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견서 또는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 공단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 경 미



담당변호사 기 영 조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법률자문 요청서

2015.11.03.

□ 법률자문 요청 사유

- 현장 근로자식당에 대한 다음의 업무추진 시 관련법규 등에 저촉 여부 확인
 -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4구역)과 관련하여 용산 사고(’09.1.20) 합의내용 중 미이행사항인 현장내 임시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 이행을 위하여 임시식당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조치 요청
- SH공사에서 관련업무를 추진할 경우 불공정 계약 등 법적 문제점 확인
- 상기 업무추진은 선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바, 법적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강구

□ 기존 현장 근로자 식당 운영현황

- 식당 선정 주최 : 시공사
- 식당 선정 방법 : 시공사 본사 또는 현장소장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경영간섭 등
- 기타 상기 업무의 추진에 의해 관계될 수 있는 법규 : 법률자문 시 검토요망

□ 법률자문 요청사항

- 불공정 계약에 해당 여부
- 시공사 입찰공고 시 안내문구를 기재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없을 지의 여부
- 상기 업무추진은 선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바, 법적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 기타사항

- 관련업무 추진시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법률자문사 자문 요망.

붙임 1.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공문 일체.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

1. 도시활성화과-7427호(2015.7.10.)와 관련입니다.
2.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4구역)과 관련하여 용산사고('09.1.20) 합의내용 중 미이행사항인 현장내 임시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불임 회의결과에 따라 협조 요청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15.7.20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회의결과 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주무관	김지호	도시활성화정책팀	이순하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07/13
-----	-----	----------	-----	---------	-----	-------

합조사

시행 도시활성화과-7506 (2015.07.13.) 접수 건적발주팀-4132 (2015.07.27.)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도시활성화과(신 / karch@seoul.go.kr
 청사 11층)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karch@seoul.go.kr / 비공개(5)(5)

하자제로 품질만족 불신제로 고객감동



서울특별시 SH공사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장(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 관련 회신

1. 도시활성화과-7506호(2015.07.13.)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 관련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SH 공사 발주예정인 현장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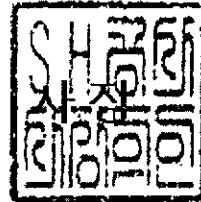
- 아 래 -

(단위 : 천원)

해당 공사명	세대수	발주예정금액	발주예정시기	비고
항동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646	96,829,000	'15.11	
항동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170	115,697,000	'15.11	

끝.

서울특별시 SH공사



파트장 **이동구** 건적발주팀장 **김길상** 건설사업처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장달수** 07/17

협조자 건축설계2팀장 **백경희** 건축공사1팀장 **정성호**

시행 건적발주팀-3898 (2015.07.17.) 접수 ()

방송번호 본부장 방침 제 252호

우 135-98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 www.sh.co.kr

전화 02)3410-7612 전송 02)3410-7795 / doklee@i-sh.co.kr / 공개



서울특별시



수신자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검토 요청

1. 도시활성화과-7506(2015.7.13.)호 및 SH견적발주팀-3898(2015.7.17.)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4구역 세입자 현장내 임시식당지원관련 세입자 요구사항이 제출되어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용가능여부 및 범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15.9.24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세입자 요구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주무관 김지호 도시활성화정책팀 이순하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09/24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0376 (2015.09.24.) 접수 건축공사1팀-4577 (2015.10.01.)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karch@seoul.go.kr
전화 2133-4635 전승 2133-4908 / karch@seoul.go.kr / 비공개(5)(5)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

용산구 원효로1가 75 아랫마을 1층 / 홈페이지 mbout.jinbo.net / 전화 02-3147-1444 / 대표메일 mbout@jinbo.net

수신	서울시장	참조	도심활성화과
발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문의	김덕진 / 010-2881-8105
발신 일자	2015. 9. 16(수)		
제목	용산참사 합의 사항 관련, 용산 4구역 철거 세입자 요구안		

-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6년이 넘게 장기간 멈춰지면서, 그동안 합의 사항이 이행이 지연되어 철거민 피해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이에 뒤 늦게라도 합의 이행의 대안을, 시 차원에서 노력해 주신데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도시개발 피해자인 용산 철거 세입자들의 임시식당 운영은 이후 서울시 재개발 정책에서 상가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의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4구역 세입자들의 생계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시와 SH공사가 합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기로 한 임시식당이 4구역 23가 구 세입자들의 생계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2개 지구로 나뉘어져 초기부담이 배가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4구역 세입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하오니, 검토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래와 관련한 서울시 및 SH 공사의 입장을 9월 24일(목)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및 문의 ; 김덕진 010-2881-8105, myoungrrang@hanmail.net)

임시식당 운영에 관한, 용산4구역 철거 세입자 요구안

1. 임시식당 건축물 건설 및 철거, 제반시설 제공
2. 미수금 문제 해결 : 대금결제는 15일 이하단위 현금결제. 발주처인 SH공사가 미수금 문제 발생하지 않게 조치
3. 운영기간 중 전기, 수도, 정화조등 비용은 건설사 부담
4. 운영기간 동안 시공사나 협력업체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겪지 않도록, 서울시, SH공사와 용산4구역 세입자와의 협력관계 유지

- 이상 -



서울특별시 SH공사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장(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용산4구역 세입자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 통보

1. 도시활성화과-10376호(15.9.24)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에 의거 용산4구역 세입자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향동지구 발주는 2015.10.20일경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시식당 운영에 관한 용산4구역 철거 세입자 요구안 검토결과. 끝.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팀 원 전재만 건축공사1팀장 정성호 10/01

협조자

시행 건축공사1팀-4580 (2015.10.01.) 접수 ()

빙첨번호

우 135-98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http://www.i-sh.co.kr>

전화 02-3410-7952 전송 02-3410-7932 / jjm1057@i-sh.co.kr / 공개

임시식당 운영에 관한 용산4구역 철거 세입자 요구안에 대한
SH공사 검토 의견

1. 임시식당 건축물 건설 및 철거, 제반시설 제공
→ 사업시행자(SH공사) 측에서 가설건축물 건설 및 철거, 제반시설 제공은 불가하며 식당영업을 행하는 주체에서 식당건설, 철거 및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미수금 문제 해결 : 대금결제는 15일 이하단위 현금결제. 발주처인 SH공사가 미수금 문제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미수금 문제는 SH공사와 무관함(식당운영자와 식당 이용자간 사인간의 거래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

3. 운영기간 중 전기, 수도, 정화조등 비용은 건설사 부담
→ 시설사용 부담금은 사용자(식당운영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항임

4. 운영기간 동안 시공사나 협력업체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겪지 않도록, 서울시, SH공사와 용산4구역 세입자와의 협력관계 유지
→ 당사자간(식당운영자, 시공사, 하도급자) 협력해야 할 사항임



서울특별시 SH공사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장(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용산4구역 세입자 현장 근로자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서울시 지침 통
보 요청

1. 도시활성화과-10376호(15.9.24) 및 건축공사1팀-4580호(15.10.1)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에 의거 용산4구역 세입자 현장 근로자 식당운영권과 관련된 서울시 지침을 15.10.30일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 15.10.13 : 항동2,3단지 입찰공고문 내 안내문구 기재

항동 2,3단지의 현장 근로자 식당은 SH공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운영권을 주어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장 설명회 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 15.10.13 : SH공사 감사실 일상감사 의견 제시

· 현장근로자 식당 운영권은 시공사의 고유권한으로 불공정계약으로 민원제기 소지 있음

· 조치의견 : 현장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SH공사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불공정 계약여부 / 관련근거 보완 / 민원대응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

나. SH공사 추진계획

- 15.11.02 : 서울시 관련지침을 통보받아 외부 법률자문 요청

- 15.11.12 : 현장설명회 개최. 끝.

서울특별시 SH공사



팀 원 전재만 건축공사1팀장 정성호 건설사업처장 김영수 10/28

협조자

시행 건축공사1팀-5070 (2015.10.28.) 접수 ()

방참번호

우 135-98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http://www.i-sh.co.kr>
전화 02-3410-7952 전송 02-3410-7932 / jjm1057@i-sh.co.kr / 공개



吉祥

법무법인

길상

(137-88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5층 전화 : 02-3486-0241 팩스 : 02-3486-0038

수 신 : 건축공사1팀 전재만 차장님

참 조 : 법무팀 김채원 대리님

발 신 : 법무법인 길상

날 짜 : 2015. 11. 9.

제 목 :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 관련 검토의견

위 제목 기재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검토대상

귀 공사는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용산4구역'이라고 합니다)과 관련하여 용산사고(2009. 1. 20.) 합의내용 중 미이행 사항인 '현장 내 임시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 예정인 '항동지구 2,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장 근로자 식당 운영권은 통상 '시공사'에게 귀속되고, 식당 운영자는 '시공사 본사' 또는 '현장소장'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것이 거래관행인 바, 귀 공사는 향후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2015. 10. 13. 항동 2, 3단지 입찰공고문에 "현장 근로자 식당은 SH공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운영권을 주어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시공사 선정에 앞서 향후 위 약정사항이 입찰계약의 내용이 될 것임을 미리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현장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귀 공사가 지정하는 것이 시공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후 논란이 우려되는 바, 귀 공사는 당해 약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와 관련한 각 법령을 검토하여 귀 공사가 현장내 근로자 식당 운영자를 선정(이하 '이 사안 식당 운영자 선정'이라고 합니다)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시공사 입찰공고시 안내문구를 기재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검토의견

가. 귀 공사의 이 사안 식당운영자 선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
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
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12. 4. 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1) 금지 이유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
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
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
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2)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가)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
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
업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
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
하고 거래상대방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마. 경영간섭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
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
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1) 대상행위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
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경영간섭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
로 판단한다.

(나) 이 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구입강제의 경
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②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
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

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경영간섭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간섭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경영간섭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경영간섭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검토의견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는 제23조 제1항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2'를 통하여 6. 거래상 지위의 남용(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유형 중 "경영간섭"을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

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라고 합니다) “6.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사의 거래상대방인 시공사는 자신이 거래할 다수의 사업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귀 공사는 이미 2015. 10. 13. 향동 2, 3단지 입찰공고문에 이 사안 식당 운영자는 귀 공사가 선정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였기에 당해 입찰에 참여할 시공사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할 것임이 명확한 바, 귀 공사와 시공사 간에 아직 거래상 지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사, 귀 공사와 시공사 간에 거래상 지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거래상 지위남용의 유형 중 경영간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 마. 경영간섭”에 의하면, 당해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경영간섭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영간섭

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안 식당 운영권을 귀 공사가 지정하는 것이 거래상 상대방인 시공사의 경영간섭이 되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귀 공사가 공익적인 견지에서 용산사고 합의내용을 이행하고자 이 사안 식당 운영권자를 선정하고, 그것이 이미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시공사가 그러한 공익적 성격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경영간섭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귀 공사의 이 사안 식당 운영자 선정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안 식당 운영자 선정이 당해 입찰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거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귀 공사가 이 사안 식당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귀 공사의 이 사안 식당운영자 선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제2조(정의)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1.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검토 의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항, 9항 등에 의하면 이 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업자이고,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인 시공사의 대부분이 위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귀 공사는 시행사로서 발주자에 불과하지 원사업자로서의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안 식당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 공사의 이 사안 식당 운영자 선정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될 여지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입찰공고단계 내지 입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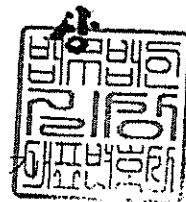
약 체결단계에서 위 사항을 입찰계약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귀 공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입찰계약에 포함시키고, 계약 상대방인 시공사가 위 사항을 입찰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명백히 인식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거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의견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이에 의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길**

변호사 문 영

강 영 철



일 시 : 2015. 11. 9.

수 신 : SH공사

참 조 : 건축공사1팀 과장 전제만, 법무팀 대리 김채원.

발 신 : 법무법인(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이상도.

제 목 : 업무질의 회신

매 수 : 6매 (표지포함)

※ 팩스나 이메일로 수신되는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귀하는 위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공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에서 의뢰하신 2015. 11. 4. 자 자문의뢰번호 2015-126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의견서

1. 질문의 요지

가. SH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향동지구 2단지 및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 예정인바,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 사고 관련 세입자들은 서울시를 통하여 용산사고 합의 이행 방법으로서 공사가 발주하는 위 공사 현장 내 임시식당 부지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공사는 ① 용산 4구역 세입자들에게 위 건설현장의 임시식당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공사 입찰 공고 시 공사가 건설현장 임시식당 부지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하면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 ③ 그 외 법적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가. 공사가 건설현장의 임시식당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결론

공사가 용산 4구역 세입자에게 건설현장의 임시식당 부지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이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일정한 유형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2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공사가 건설 현장 내 임시식당 부지를 용산 제4구역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 또는 사업활동 방해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체결하는 건설공사계약은 법률상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그 성질상 시공사는 건설사업에 관하여 공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건설공사에서 시공사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및 주변의 안전관리, 건설근로자 관리 등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업무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식당 관리·운영 역시 건설 시공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같은 경우는 “ ... 함바식당의 운영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공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조합원의 동의나 이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이라고 하고 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동법 제7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는 사업주가

건설현장식당을 설치하고 건설근로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이고, 사업활동방해 행위로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¹은 어떤 행위가 경영간섭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정의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을 통해 살펴보자면 ① 공사가 건설공사 현장 사업 부지 중 일부를 임시식당 부지로 용산 제4구역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위와 같은 임시식당 부지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게 있는 것이어서, 건설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 ③ 식당 부지 제공만으로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식당 이용에 관한 권리를 박탈한다거나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④ 건설 현장 내 임시식당 운영은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에 불과할 뿐 건설 시공사의 본질적인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것도 아

¹ 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등

년 점, ⑤ 위와 같은 부지제공은 공사가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산철거민 사고에 따른 서울시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운영기간 중 전기, 수도, 정화조 등 임시식당 부지와 관련한 제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건설사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나. 시공사 입찰 공고 시 공사가 건설현장의 임시식당 부지를 용산 제4구역 세입자에게 제공한다는 문구를 기재한다면 법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및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등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가 건설현장의 임시식당 부지를 용산 제4구역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에 공사 입찰 공고 시 그와 같은 조건은 사전에 공지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공사 조건을 통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정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 시에 그와 같은 안내를 하는 것은 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시공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관계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시공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법률적 문제를 제거함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2015. 11. 9.

법무법인(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 장 식



담당변호사 이 상 도



▣ 본 의견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 판단 및 처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에 또는 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